

대법원 2003. 4. 11 선고 2002다74824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03. 4. 11 선고 2002다74824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2. 11. 19 선고 2001나45333 판결

전 문

원고,피상고인

피고,상고인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.11.19.선고 2001나45333 판결

판결선고 2003.4.11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

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0.10.30.선고 89다카34572 판결, 1994.10.11.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)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(이하 이라 한다) 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(이하 라 한다) 로부터 합계 30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, 주식회사 을 주채무자로 한 17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심판시 제2목록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, 주식회사 을 주채무자로 한 13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심판시 제3목록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, 이 와 동시에 위 제2목록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17억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, 제3목록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와 이 13억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,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, 보증서 또는 근보증서가 작성되었으며, 피고들 및 은 위 각 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보등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도 "잘 읽었음"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, 피고들은 주식회사 의 에 대한 17억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2목록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외에 그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사도 표시하였고 의 의사도 이와 일치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. 원심은 나아가,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의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거짓말함에 따라 연대보증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 착오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변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들 및 그 배우자들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이거나 부동산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근저당권설정과 연대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과정에 한 두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 및 그 배우자 12명 모두가 동일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점,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는 근저당권설정서류와 각각 별개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을 모두 읽어보지 않더라도 각 서명란 앞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점, 피고들과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 중 일부를 택지분양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받기로 약정되었기 때문에 이 택지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들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대보증이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, 위 제2,3,목록 토지들의 감정가격이 당시 48억원에달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종속하는 연대보증을

하더라도 자신들이 실제로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(그 후 위 토지들에 대한 경매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된 것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한 것이었다)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이 의 의 기망이나 자신들의 착오로 인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.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·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성립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.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.

또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 없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가 기망·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, 즉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이 위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주 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고현철